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54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03	이수진의원	2024. 9. 11.	2024. 11. 14.
	4719	정부	2024. 10. 16.	2024. 11. 14.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 사제2소위원회(2024. 11.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는 법 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비용추 계 생략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정확한 추진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하는 한편,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 며,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 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 나.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② (생 략)	무)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
	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하여야 한다.
<u> <신 설></u>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
	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
	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
	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u>사항</u>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u>사항</u>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u>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 정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u>교육과정</u>을 1년 이상 운영하 지 아니하는 경우
- 4. (생략)
- ③ ④ (생 략)

<u>한</u>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
<u> </u>	로 정하는 사	ठे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
- 4.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